

보도	2025.6.9.(월) 조간	배포	2025.6.5.(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	책임자	부국장	송현철	(02-3145-7645)
		담당자	선 임	천가은	(02-3145-7640)
	검사역		김종현	(02-3145-763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책임자	팀 장	신민희	(02-3774-9761)
		담당자	차 장	임은경	(02-3774-9762)
	과 장		최봉석	(02-3774-9766)	
금융투자협회 회원조사부	책임자	부 장	박응식	(02-2003-9390)	
	담당자	부부장	이준호	(02-2003-9398)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하였으며, 검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18사)에 대해선 수사의뢰 既완료

◆ '24.8월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유료회원 대상 양방향 SNS채널 영업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표시·광고 금지 등

-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유의사항>

- 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 주세요!
- ②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현황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조회
 - 미신고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 ③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④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주세요!

I.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
 -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고, 위법 유형 및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
 - '24.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
 - 이에 기존 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4년에도 영업실태를 점검
- * 이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표시

II. 점검 개요 및 점검결과

1 | 점검 개요

- **(점검방식)**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암행점검)하고
 -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의 게시물, 광고를 확인하여 적법성,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일제점검)
- **(점검대상)** 모니터링 과정* 중 점검필요 업자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진행하고, 장기 미점검 업자 중심으로 일제점검 실시
 - * 소비자피해 관련 다수 민원, 피해자 카페 및 유튜브의 홍보 내용 검색 등
- **(점검항목)** 소비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위법행위*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신설 규제의 준수 여부도 추가로 확인
 - *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등

2 | 점검 결과

- **(적발건수)** 745사를 점검하여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 적발
 - 암행점검 대상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하였으며, 일제점검 대상 700사 중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
 - '23년(58사, 61건) 대비 54사(69건) 증가

<'20~'24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업체 수>

(단위: 사)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일제	341	43	620	85	600	58	650	31	700	103
암행	10	6	40	23	45	26	71	27	45	9
합계	351	49	660	108	645	84	721	58	745	112

3 | 위반유형별 점검 결과

- **(주요 위법유형)**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
 - **(준수사항 미이행*)** '24년 신설 규제 사항으로 58건 적발
 - * 업무 등에 관해 ①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②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③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 **(보고의무 미이행)** 폐업 후 미신고(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1건) 등 총 46건으로 '23년(30건) 대비 16건 증가
 - **(미등록 투자자문업)** 16건으로 전년(23건) 대비 7건 감소
 - **(부당표시 광고*)** '24년 신설 규제 사항으로 7건 적발
 - * 수익률 왜곡(●목표수익률 제시, ●개별 수익률을 합산하여 한 종목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 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업자 대비 유리하다는 표시·광고
 - **(미등록 투자일임업)** 3건으로 전년(5건) 대비 2건 감소

<'20~'24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반유형별 불법행위 혐의 건수>

(단위: 건,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	비중	적발	비중	적발	비중	적발	비중	적발	비중
보고의무 미이행	24	44.4	47	39.2	23	24.7	30	49.2	46	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8	33.3	38	31.7	60	64.5	23	37.7	16	12.3
미등록 투자일임업	4	7.4	28	23.3	10	10.8	5	8.2	3	2.3
무인가 투자중개업	3	5.5	4	3.3	-	-	3	4.9	-	-
준수사항 미이행	'24년 신규 점검항목								58	44.6
부당표시 광고	'24년 신규 점검항목								7	5.4
불건전 영업행위	'24년 신규 점검항목								-	-
기타	5	9.4	3	2.5	-	-	-	-	-	-
합계	54	100.0	120	100.0	93	100.0	61	100.0	130	100.0

[참고] '24.8월 시행 유사투자자문업 신설 규제 주요 내용

- ①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 ②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표시·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광고 등 금지
- ③ 표시·광고 시 개별적 자문 및 자금운용이 불가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및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할 필요

III. 향후 계획

① 점검 결과 사후 처리 진행

-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 추진*

* 금융위는 '25.6월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하여 검사 예정

※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既완료

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준수 촉구·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 금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 촉구
-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 강화

☞ (첨부)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참조

③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지속

-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수사기관 통보 포함)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첨부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은 검증되지 않아 자문 계약 이행 여부와 자문 내용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③ 계약 체결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해지·환불, 과도한 위약금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주세요.

④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해 주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 보전·이익 보장·목표수익률 등의 광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바랍니다.
 -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 투자자문피해신고」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 ① **(미등록 투자자문업)** 온라인 양방향 SNS(카카오톡 단체방, 유튜브 채널 등)를 통한 유료 회원제를 영위하거나, 특정인을 유인하여 유료 투자상담·조언 등
→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② **(미등록 투자일임업)**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 카피 트레이딩, AI주식자동매매
→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③ **(무인가 투자중개업)** 회원들이 비상장주식 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투자자를 사설거래소로 유인하여 알선 수수료를 수취 등
→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투자 중개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1조)
- ④ **(보고의무 미이행)**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지를 신고하였음에도 금감원에 폐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등기부등본·계약서상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의 정보와 상이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②)
- ⑤ **(손실보전 금지)** 투자자에 투자 조언을 제공하면서 원금에 대하여 손실 보전(약속), 이익 보장(제공)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①사전 손실 보전 약속 ②사후 손실 보전, ③사전 이익 보장 약속, ④사후 이익 제공 등 금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 ⑥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자에 금전 등을 대여·중개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받아 보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①금전 등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하거나, ②투자자에 금전·증권을 대여·중개·주선, ③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 추가 대가 수령, ④금융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 이전 해당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 금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㉓ **(부당표시 및 광고 금지)**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 제시하거나, 투자 조언으로 이익이 보장된다는 등 내용 표시·광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㉑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㉒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㉓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하는 등 표시·광고 금지(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㉔ **(준수사항 미이행)**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홈페이지 및 게시글 등에 “개별 상담 및 운용이 불가하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고,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문구 누락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㉑개별적인 투자상담·자금운용이 불가하며, ㉒원금에 손실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되고, ㉓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표시·광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의3)

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에 없는 업체임에도 유료 투자상담·조언 등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㉒)